

발전계획 관리 규정

제1조(목적) 대학의 발전과 대내외 교육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발전계획의 관리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발전계획을 관리하는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의 적용범위라 함은 루터대학교 특성화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말한다.

1. 중장기발전계획 및 기본정책 수립
2. 대학 및 전공별 특성화에 관한 계획수립 및 이행 (2020.2.25.개정)
3. 대학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의 추진
4. 학교조직·제도 개선 및 각 기관의 기능의 조정
5.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시행 및 개선사항 이행 관리
6. 기타 대학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3조(절차) 대학의 발전계획 수립 과정은 아래와 같다.

1. 자가진단을 통한 발전계획 재정립
2. 추진조직 구성
3. 여건 분석 및 역량 분석을 통한 대내외 분석
4. 특성화 및 실행과제의 방향 의견수렴
5. 비전 및 목표의 차별화를 위한 특성화 계획 수립
6. 구성원 간 설명회 진행 및 발전계획추진위원회 심의
7. 총장 및 이사장 승인

제4조(환류) ① 부서 단위의 추진 실적 점검을 위하여 부서별 성과평가 및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를 시행한다.

② 대학 차원의 추진 실적 점검을 및 환류를 위하여 성과 평가, 중간 점검, 개선 계획 및 추가경정예산편성과 연계하여 운영한다.

③ 발전 계획의 환류 체계는 아래와 같다.

1. 성과관리센터에서 평가 계획 수립
2. 발전 계획 평가와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
3. 부서별 성과평가보고서 및 실적 자료 작성
4. 성과관리센터에서 평가 지표를 집계 후 성과평가보고서를 작성
5. 자체평가위원회에서 평가 기준 심의 후 발전계획추진위원회에서 승인
6. 도출된 성과평가 결과로 성과관리센터에서 개선 계획 작성
7. 개선 계획을 바탕으로 부서 및 대학 수정 운영계획서 작성
8. 성과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반영
9. 개선 계획을 바탕으로 대학 발전계획 수정 및 보완

제5조(회의)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은 발전계획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한다.

제6조(주관부서) 주관 부서는 기획조정처(성과관리센터)에서 주관하고 전체 부서에서 부서별 성과평가보고서 및 실적 자료 입력, 개선 계획을 진행한다.

제7조(관계 부서의 협조) 주관 부서에서는 발전 계획과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8조(운영세칙) 발전계획의 필요한 사항과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발전계획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